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우재준 · 엄태영
김형동 · 윤영석 · 최보운
김재섭 · 안상훈 · 박수영
주진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,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·접수할 수 있음.

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,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·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47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9조의3(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 등) ①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인·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, 개인·법인·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④ 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·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부금품 관리위원회를 둔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·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 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9조의3(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 등) ①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인·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, 개인·법인·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.</u> <u>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</u> <u>④ 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·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부금품 관리위원회를 둔다.</u> <u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모</u>

<u>집·접수·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</u> <u>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 관리</u> <u>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</u> <u>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